

■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제재부가금의 산정기준(제20조제1항 관련)

1. 제재부가금은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사유와 직접 관련된 지급대상 농지등에 대하여 이미 지급한 금액에 가목 또는 나목의 구분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위반행위	제재부가금 부과율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등록하거나 기본직접지불금을 수령한 경우	500퍼센트
나. 기본직접지불금을 수령하기 위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등을 분할하는 경우	300퍼센트

2. 부과권자는 그 행위가 경미한 부주의로 인한 경우에는 제1호에 따라 산정된 제재부가금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